■ 공소청사건사무규칙 [별지 제139호서식] <개정 2026. 10. 1.>

○ ○ ○ 공 소 청

제 0000-0000 호 0000. 00. 00.

수 신 : ○○○(기관명)

제 목 : **압수 · 수색 · 검증영장신청 기각(금융계좌추적용)**

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압수 · 수색 · 검증영장신청이 있는 바, 아래와 같은 사유로 압수 · 수색 · 검증영장신청을 기각합니다.

피 의 자	성명 ()
	주민등록번호 (세)
	직업
	주거
변 호 인	
대 상 계 좌	계 좌 명 의 인: 별지 압수 · 수색 · 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
	개설은행 · 계좌번호: 별지 압수 · 수색 · 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
	거 래 기 간 : 별지 압수 · 수색 · 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
	거래정보 등의 내용: 별지 압수 · 수색 · 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
압 수 할 물 건	별지 압수 · 수색 · 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
수색 · 검증할 장소, 신체 또는 물건	별지 압수 · 수색 · 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
범죄사실 및 압수 · 수색 · 검증이 필요한 사유	별지 압수 · 수색 · 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
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유	
영장을 여러 통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	
일출 전 일몰 후 집행이 필요한 취지 및 사유	
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	

○○○ 공소청

검 사 ㊞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